

## II. 결론 및 권고\*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 권고를 검토한 후, 인권이사회 제 42차 회기가 끝나기 전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 12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 인권 조약 가입 가능성을 고려한다 (벨라루스).
- 126.2 아직 당사국이 아닌 국제 인권 조약 비준을 검토한다(볼리비아 다민족국). 아직 당사국이 아닌 기타 핵심 인권 조약 비준을 검토한다 (인도네시아).
- 126.3 아직 당사국이 아닌 주요 국제 인권 조약 비준을 고려한다 (코트디부아르).
- 126.4 핵심 인권 조약 모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에스토니아).
- 126.5 주요 인권 조약 모두를 비준하며, 특히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그리스).
- 126.6 아직 당사국이 아닌 주요 인권 조약 모두를 비준한다 (온두라스).
- 126.7 아직 당사국이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 가입을 고려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
- 126.8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한다 (이라크).
- 126.9 앞서 권고된대로, 핵심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며, 특히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라트비아).
- 126.10 (a)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 (b)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c)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한다 (포르투갈).
- 126.11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아닌 기타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다 (대한민국).
- 126.12 아직 당사국이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당사국인 인권 조약 상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한다 (팔레스타인국).
- 126.13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한다 (조지아).
- 126.14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한다 (몬테네그로).
- 126.15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 (토고).
- 126.16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한다 (브룬디).

\* 본 국문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보고서(A/HRC/42/10)를 참고용으로 일부 발췌 번역한 것으로 유엔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 126.17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준 노력을 강화한다 (칠레).
- 126.18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 (덴마크) (몬테네그로) (세네갈).
- 126.19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기를 특정한 계획을 마련한다 (영국).
- 126.20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조지아).
- 126.21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다 (우루과이).
- 126.22 고문방지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폴란드).
- 126.23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준을 고려한다 (동티모르).
- 126.2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뿐 아니라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프랑스).
- 126.25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며, 1969년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납치된 이들과 관련하여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이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조약체 및 절차에 제출된 납치 의심 개별 진정 건 모두에 답변한다 (우루과이).
- 126.26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가입하고, 국내법에 이를 반영한다 (크로아티아).
- 126.2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가입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즉각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조항을 반영하는 조치 등 국내법을 전면 조정한다 (에스토니아).
- 126.28 앞서 권고된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비준하고, 로마 규정에서 명시하는 의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전면 조정한다 (라트비아).
- 126.2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비준한다 (룩셈부르크).
- 126.30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 (포르투갈).
- 126.31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8개를 비준한다 (스웨덴).
- 126.32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토고).
- 126.33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토고).
- 126.3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종식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미비아).
- 126.35 1949년 8월 12일자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제 2 의정서)를 비준한다 (스위스).
- 126.36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인권 조약 이행이 가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투르크메니스탄).
- 126.37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 위원회 인적 및 금전적 자원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내 인권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리아).

- 126.38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 위원회 역할을 개선하여 국제인권조약을 널리 배포하고, 인권조약체의 최종검토의견서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국내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시리아아랍공화국).
- 126.3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고, 특별절차 위임 권한 수행자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서 제기된 권고를 이행한다(코스타리카).
- 126.40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유엔 메커니즘과의 대화에 진실되게 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하여 독립적인 인권 감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체코).
- 126.41 국제공동체와의 협력과 대화를 도모하며, 특히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및 특별절차와 협력과 대화를 도모한다(에콰도르).
- 126.42 유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과 대화를 이어간다(베트남).
- 126.43 유엔 기관 및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한다(팔레스타인국).
- 126.44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자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다한다(폴란드).
- 126.45 유엔 인권조약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적으로 권고 이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몰디브).
- 126.46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우루과이).
- 126.47 국가 방문을 요청한 특별절차 모두에 접근을 허용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아프가니스탄).
- 126.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요청한 유엔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모두에게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한다(호주).
- 126.49 특별절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요청을 수용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 협력하여 대화 및 협력 의지를 실행에 옮긴다(오스트리아).
- 126.50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전원이 해당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 초청한다(온두라스).
- 126.51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가 요청한 국가 방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 협력한다(라트비아).
- 126.52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전원을 상시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라트비아).
- 126.53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의 공식 방문을 실현하여 국제 인권 제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멕시코).
- 126.54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와 협력한다(세네갈).
- 126.55 법·관행상 여성 차별 실무그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하도록 초청한다(스웨덴).
- 126.56 유엔 및 기타 국제 인도주의 기관에 접근을 허용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아프가니스탄).
- 126.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가 제한없이 독립적으로 해당국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한없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미합중국).
- 126.58 국제 인도주의 기관이 수감자를 비롯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제한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한다(아일랜드).

- 126.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서 인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없는 접근을 보장한다 (노르웨이).
- 126.60 유엔 특별절차제도에서 권고한 개혁을 이행한다 (크로아티아).
- 126.61 제 2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 이행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부탄).
- 126.62 아동권리보장법 이행 과정에서 유엔아동기금 및 기타 국제기구에 기술 협력과 역량 개발 지원을 요청할 것을 고려한다 (불가리아).
- 126.63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유지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
- 126.64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를 다루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유지한다 (쿠웨이트).
- 126.65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유지한다 (미얀마).
- 126.66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유지한다 (파키스탄).
- 126.67 기술 지원의 첫 발을 내딛는 조치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유의미한 협력을 시작한다 (폴란드).
- 126.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포르투갈).
- 126.69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기술 지원 요청을 고려한다 (동티모르).
- 126.70 인권 관련 국제 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쿠웨이트).
- 126.71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개선하도록 국제 교류를 도모한다 (미얀마).
- 126.7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도록, 그 원칙과 요건을 관련 국내법에 반영한다 (투르크메니스탄).
- 126.73 자국 시민이 완전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사법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어나간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
- 126.74 국내법을 전면 검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대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한다 (라오인민민주공화국).
- 126.75 국제 인권 표준에 맞춰 국내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러시아연방).
- 126.76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내 법적 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이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리아아랍공화국).
- 126.7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원칙과 요건을 관련 국내법에 반영한다 (시리아아랍공화국).
- 126.78 국제인권조약 조항에 맞춰 국내법을 조정하도록 한다 (짐바브웨).
- 126.79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을 위한 사법 조치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에티오피아).
- 126.80 국제 인권 기준과 표준에 맞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네팔).
- 126.81 인권 증진과 보호 노력을 계속한다 (나이지리아).
- 126.82 사회 취약 계층 인권 증진과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나이지리아).

- 126.83 시민 모두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한다 (오만).
- 126.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인권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조율을 강화한다.
- 126.8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효과적으로 확실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베트남).
- 126.86 인권 증진과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강화한다 (팔레스타인국).
- 126.87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국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벨라루스).
- 126.88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내 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국내 인권 기관을 설립한다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 126.89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국내 인권 기관을 설립한다 (이라크).
- 126.90 파리 원칙에 맞춰 인권 수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내 기관을 설립한다 (세네갈).
- 126.91 국가 경제 발전, 보건 부문 발전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전국민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쿠바).
- 126.92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6-2020) 이행 노력을 지속한다 (콩고민주공화국).
- 126.93 국가교육발전전략 (2015-2032) 이행 노력을 지속한다 (콩고민주공화국).
- 126.94 대의 기관 (people's power organs) 및 사법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인식 고취 노력을 강화한다 (에티오피아).
- 126.95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 후손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여 문화와 역사를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아프리카 후손이 인류에 기여한 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문화 교류를 조직한다 (아이티).
- 126.96 시민들의 인권 인식 고취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미얀마).
- 126.97 인권 인식 고취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필리핀).
- 126.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전문을 자국 언어로 번역하여 자국 내 네트워크 (광명성)에 게시한다 (스웨덴).
- 126.99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보건, 교육 및 사회 부문 예산 책정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여, 지방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츠와나).
- 126.100 지속가능개발목표 1-3에 맞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 모두가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적 지출을 조정한다 (네덜란드).
- 126.101 가능한 부문 모두에서 도농 간 격차를 줄이도록 혁신적인 조치를 지속한다 (투르크메니스탄).
- 126.102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하에 조치를 마련 및 유지하여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녕을 보장한다 (쿠바).
- 126.103 사회 계층,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사법 조치를 취한다 (온두라스).
- 126.104 식량, 보건, 교육 접근성 및 기타 권리를 확대 보장하도록 반차별 관련

사법 틀 강화 조치를 취한다(인도네시아).

126.105 별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persons with special needs)을 보호하고 전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전략을 마련한다(오만).

126.106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 인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필리핀).

126.107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녕을 도모하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확대한다(짐바브웨).

126.108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국민이 인권 모두를 잘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중국).

126.109 유엔과 국제공동체와 협력하여 보건권 이행을 포함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대한민국).

126.110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피지).

126.11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과 환경보호법 이행 시 반드시 인권을 바탕으로 접근하도록 한다(피지).

126.112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여성, 아동, 장애인, 토착민 및 기타 소외된 지역사회를 포용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피지).

126.11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국내외 여행을 포함하여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모두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이탈리아).

126.11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여행 등을 포함하여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모두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크로아티아).

126.115 사형이 적용되는 죄목을 줄이고, 사형 선고와 실행 관련 공식 수치를 제공하며, 사형 제도를 중지하도록 고려한다(이탈리아).

126.116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처형 행위를 중지한다(벨기에).

126.117 사형 제도 적용 정보를 공개한다(벨기에).

126.118 사형 제도를 폐지하도록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우크라이나).

126.119 사형이 적용되는 죄목을 줄이고, 사형 제도를 중지하여 중국에는 폐지에 이르도록 한다(프랑스).

126.120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처형 행위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조지아).

126.121 사형을 제한하고/하거나 폐지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한다(그리스).

126.122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아이슬란드).

126.123 사형 제도 폐지를 재차 고려한다(모잠비크).

126.124 처형 제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사형 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한다(나미비아).

126.125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 처형을 즉각 중단한다(뉴질랜드).

126.126 사형 적용을 즉각 중지하여 사형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최근 이행된 처형 및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자료를 공개한다(스페인).

126.127 사형 제도를 중지한다(동티모르).

126.128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기타 학대를 중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도록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오스트리아).

126.129 성폭행을 포함한 고문 및 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특히 국가안보 및 치안 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과 인식 고취 캠페인을 벌이고 법을 시행하는 등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독일).

126.1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스페인).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원칙)과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원칙)을 이행하여 구금 환경을 개선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태국).

126.132 유엔 아동권 협약 제 1조에 명시되었듯 수감자와 아동을 동원하는 등 강제 노동 관행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한다(영국).

126.133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인신매매를 불법화하는 법을 채택하고, 인신매매 생존 여성 피해자를 지원한다(이스라엘).

126.134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매매를 근절하는 정책 채택을 고려한다(필리핀).

126.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국내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프랑스).

126.136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종교나 신념을 근거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박해를 방지 및 철폐하며, 사회 내 종교적 관용과 대화를 촉진한다(그리스).

126.137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기타 종교사회나 무리에 속한 이들이 차별, 보복 또는 감시에 대한 두려움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아일랜드).

126.138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표준에 맞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고려하여 법과 국내 정책을 검토한다(코스타리카).

126.139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표준에 맞춰 법과 관행을 개혁한다(그리스).

126.140 국제 표준에 맞춰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도입한다(그리스).

126.14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룩셈부르크).

126.142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구두, 필기 또는 인쇄의 형태로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보장한다(멕시코).

126.143 시민사회단체가 감시, 체포 및 기타 형태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폴란드).

126.144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권을 증진한다(이라크).

126.145 자국민 간,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및 자식을 포함하여 타인과의 정기적인 직접 소통을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않는다(스위스).

126.146 독립적인 사법부 기능을 보장하고, 절차 보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판결을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코스타리카).

126.147 해당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으로부터 기인하는 의무를 준수한다(우크라이나).

126.148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하여 자국민 모두가 국내외 거주와 무관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직접 가족 및 타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국제법 및 표준에 따르는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핀란드).

126.149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가족 분리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 (대한민국).

126.150 교육 및 보건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무상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프가니스탄).

126.151 전국적으로 식량, 보건, 교육 및 적절한 주거 접근성을 확대한다 (캄보디아).

126.152 교육 및 보건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교육권과 보건권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중국).

126.153 지방에서 보건권, 교육권 및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더욱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한다 (코스타리카).

126.154 앞서 권고된대로 식량, 보건, 물, 위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우크라이나).

126.155 모두를 위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여성 아동 및 장애인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 (네팔).

126.156 자국민, 특히 가장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교육, 식량, 보건 접근을 계속해서 보장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126.157 전 국민에게 식량권과 보건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하며, 아동,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 계층 및 특정 계층에서 우선 순위를 둔다 (태국).

126.158 국가 식량 배급 정책을 계속해서 이행한다 (볼리비아 다민족국).

126.159 전 국민에게 식량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칠레).

126.160 수 백만 명, 특히 아동, 여성, 노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에콰도르).

126.161 국내 식량 접근성이 차별없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가배급제도가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에게 식량을 보장하도록 한다 (핀란드).

126.162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한다 (캄보디아).

126.163 모두가 평등하게 지불가능한 비용에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알제리).

126.164 국내 신생아 사망률과 영양실조 비율을 더욱 줄여나가도록 유의미한 조치를 강화한다 (쿠바).

126.165 보건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한다 (이집트).

126.166 보건권을 보장하도록 공공 보건 서비스 개선 조치를 이어간다 (니카라과).

126.167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보건 제도 현대화를 지속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126.168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국민이 전 교육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집트).

126.169 교육권 증진 조치를 강화한다 (니카라과).

126.170 지방 학교 교육 및 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파키스탄).

126.171 학교 인프라에 자원을 더 할당하고, 전국에 이를 동등하게 맞춰 교육 제도 품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세르비아).



- 126.172 성평등을 보장하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아르헨티나).
- 126.173 실제 성평등이 보장되고,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호주).
- 126.174 여성권 및 아동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부탄).
- 126.175 여성권과 여성 역량강화(empowerment)를 도모할 수 있는 전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채택하며, 그 이행을 살피고 평가한다 (불가리아).
- 126.176 아동 대상 폭력을 막고 여성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이 국가 기관에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이집트).
- 126.177 여성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정책 결정 기관 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파키스탄).
- 126.178 여성 역량 강화를 촉진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필리핀).
- 126.179 성평등 증진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 (베트남).
- 126.180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 및 채용 접근 문제를 살핀다 (코트디부아르).
- 126.181 녀성권리보장법을 검토하여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여성에게 가해질 경우 모든 부문에서 이를 범죄화하도록 한다 (벨기에).
- 126.182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a) 강간과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형법상 정의한다. (b) 법집행담당관, 사법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 대상 폭력을 파악하고 방지하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c) 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성기 수색을 금지한다 (프랑스).
- 126.183 녀성권리보장법 등 법령을 검토하여 강간과 여성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정의한다 (아이슬란드).
- 126.184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인식 고취 캠페인, 사법 서비스, 생존자 지원 및 보호소 운영 등을 포함한다 (이스라엘).
- 126.185 녀성권리보장법 이행을 강화하고 강간과 여성 인신 매매 등을 분명하게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멕시코).
- 126.186 구금 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노르웨이).
- 126.187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며, 특히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한다 (알제리).
- 126.188 사회 및 경제적 박탈과 불평등, 아동 영양실조 및 아동 노동 등을 포함하여 영아 및 아동 사망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브라질).
- 126.189 아동 학대 방지를 전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을 설립한다 (덴마크).
- 126.190 가정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며, 체벌 금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스라엘).
- 126.191 아동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 모두가 적용받도록 한다 (몰디브).
- 126.192 아동 보호 국내법을 검토하여 18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며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한다 (나미비아).

- 126.193 장애 아동을 특수 시설이나 특수반에 우선 배정하지 않고, 장애 아동을 포용하는 교육을 마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불가리아).
- 126.1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장애자보호위원회와 역내 타 국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인도네시아).
- 126.195 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을 배가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
- 126.196 장애인에게 동등한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성 및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노르웨이).
- 126.197 장애인권리위원회 검토 참여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 (대한민국).
- 126.198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주거 시설 및 대중 교통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면면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세르비아).
- 126.199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가 조치를 취한다. 가령 공공 장소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없애도록 인식 고취 캠페인을 벌인다 (싱가포르).

127. 상호 대화 시 제시된 권고 및 아래 나열된 권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검토했으며,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27.1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조약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모두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국가 방문을 허용한다 (아르헨티나).
- 12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한다 (보츠와나).
- 12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국가 방문을 요청한 유엔 특별절차제도 접근 허용을 고려한다 (칠레).
- 127.4 앞서 권고된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한다 (우크라이나).
- 127.5 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 특별절차 모두의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한다 (에스토니아).
- 12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 특별절차 모두의 접근을 허용하고 협력한다 (독일).
- 12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기타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모두의 접근을 허용한다 (이탈리아).
- 127.8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문을 수용한다 (캐나다).
- 12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여타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모두가,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룩셈부르크).
- 127.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우루과이).
- 127.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기타 주체별 특별보고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민에게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질랜드).
- 127.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한다 (노르웨이).
- 127.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을 즉각

- 개선하며, 특히 국제 인권조약체 및 메커니즘 모두가 국가에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덴마크).
- 127.14 유엔 기관 및 특별절차, 대사관 및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하여 국가 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 127.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 메커니즘 모두에 즉각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한다 (폴란드).
- 127.16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특별절차를 상시 초청한다 (벨기에).
- 127.17 기아 탈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등 균비 지출보다 국민 인권을 우선시한다 (호주).
- 127.18 성분 제도를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하여 차별을 종식하고, 국민에게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보장한다 (아르헨티나).
- 127.19 즉각 성분 제도 폐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인권 침해를 가중하는 제도적인 차별을 해결한다 (호주).
- 127.20 가족 배경과 정권 충성도에 따라 시민을 차별하는 성분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중지한다 (체코).
- 127.21 성분 제도로 계층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독일).
- 127.22 성분 제도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념과 사회 내 기독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하여, 기독교가 사회주의 맥락 하에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를 이해한다 (아이티).
- 127.23 종교, 사회 계층, 정치적 의견 및 젠더 등을 바탕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중단한다 (이스라엘).
- 127.24 강제 실종 및 자의적 처형을 금지하고, 사형 제도 통계를 공개한다 (체코).
- 127.25 정치범 수용소 (political prison camp) 및 기타 구금 시설 내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이나 기타 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16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 127.26 노동단련대 (labour training camp), 감옥,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하여 교정 시설에 구금된 이들에게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예외없이 가족이 구금자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 맞춰 구금자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 (독일).
- 127.27 노동의 대가를 적절하게 치르지 않는 관행을 중단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동원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동원이 될 경우 교육 접근성이 저해된다 (독일).
- 127.28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제공한다 (스페인).
- 127.29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중단한다.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8.7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도 동원하지 않는다 (스위스).
- 127.30 납치 피해자 전원을 즉각 송환하는 등 납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한다 (일본).
- 127.31 납치 피해자 및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한다 (대한민국).
- 127.32 정치범 수용소 내 자유 박탈 관행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도모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절차 보장을 존중한다 (아르헨티나).
- 127.33 정치범 수용소를 예외없이 즉각 철폐하며, 연좌제를 근거로 구금된 친척을 포함하여 양심수 전원을 석방한다 (오스트리아).

- 127.34 당사국으로 참여한 인권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및 연좌를 중단한다 (캐나다).
- 127.35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YS-11의 납치 당시 납치된 항원을 비롯한 나머지 승무원과 승객을 즉각 풀어준다 (아이슬란드).
- 127.36 정치범 수용소 모두를 즉각 해체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며,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 자의적 구금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엔 특별절차를 포함하여 국제 참관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구금 시설 모두에 제한없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미합중국).
- 127.37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철폐하고 조건없이 정치범 전원을 석방한다 (룩셈부르크).
- 127.38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도록 즉각 조치한다 (뉴질랜드).
- 127.39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단련대 (labour camp)를 모두 해체하고 “연좌제”를 근거로 수감된 친척을 포함하여 양심수 전원을 조건없이 석방한다 (슬로베니아).
- 127.40 구금자가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구금 시설 모두를 해체한다 (스페인).
- 127.41 정치범 수용소 모두를 즉각 해체하고, “연좌제”를 근거로 구금된 친척을 포함하여 양심수 전원을 조건없이 석방한다 (스웨덴).
- 127.42 형법과 기타 유관 법령 또는 정책을 개정하여 종교 서적 소지 및 유포를 비범죄화 한다 (미합중국).
- 127.43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또는 정치 참여의 자유를 처벌하는 국내법 조항을 모두 철폐한다 (캐나다).
- 127.44 국내외 언론 검열을 중단하고, 독립 언론 설립을 허용한다 (캐나다).
- 127.45 검열을 중단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한다 (체코).
- 127.46 독립 신문사 및 기타 언론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언론 검열을 전면 중단하며, 학교, 도서관 및 기타 공공 시설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도록 한다 (그리스).
- 127.47 기혼 여성이 의무적으로 사회주의여성동맹(Socialist Women’s Union of Korea)에 가입하는 관행을 중단하며, 해당 동맹 구성원에게 무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 127.48 개인, 단체, 언론 및 의사소통을 감시 및 검열하는 행위 모두를 중단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및 표준에 반하는 행위이다 (영국).
- 127.49 독립적인 사법부를 세우고, 정치범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된 이들을 전원 조건없이 석방한다 (체코).
- 127.50 개인의 권리(guarantees)를 존중하지 않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고, 소송 절차를 공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프랑스).
- 127.51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그밖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또는 굴욕적인 대우,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한다 (아르헨티나).
- 127.52 인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행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차원의 관행을 모두 중단한다 (뉴질랜드).
- 127.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내용을 수용하고, 조사위원회 권고를 모두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령 적법절차 부정, 자의적 구금, 수감자 고문 및 학대, 납치 피해자 송환, 사형제 등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한다(호주).

127.54 정치범 전원 석방 및 독립 언론 설립 허용 등 조사위원회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한다(아이슬란드).

127.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를 이행한다(슬로베니아).

127.56 조기 아동 영양실조 등 만성 식량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식량 접근 관련 정부 정책이 차별과 정치적 고려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오스트리아).

127.57 식량 접근 및 배급 관련 정부 정책이 차별과 정치적 고려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브라질).

127.58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식량을 쓰지 않으며, 무상 배급을 보장한다(스페인).

127.59 여성이 민간 경제 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려면 할당량만큼의 현물, 현금 또는 무급 노동을 정부와 군에 제공해야 하는 착취적인 관행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금지한다(아이슬란드).

127.60 아동을 모든 형태의 착취, 강제 및 위험한 노동에 동원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하며, 특히 학교 교육 중에 노동에 동원하지 않는다(오스트리아).

127.61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아동을 동원한 강제 노동 및 착취를 방지하고 척결하며, 아동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한다(이탈리아).

127.62 아동을 군사적으로 무장시키거나 신병으로 모집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우크라이나).

127.63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돌봄 서비스로부터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코스타리카).

---